
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노숙인 등에 대한 노숙인 실태조사에 여성노숙인 보호와 관련된 노숙인시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(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